

강서푸드뱅크 · 마켓 2호점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0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4월 6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라. 상정일자: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4.20.)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이동연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등촌3동에 신축중인 강서나눔곳간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강서푸드뱅크·마켓의 2호점을 신규 개설·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1호점과 함께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면적(m ²)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	등촌동 687-3 (강서나눔곳간)	지상1층	209.28

○ 위탁사무내용

- 강서 푸드뱅크·마켓 2호점 운영 및 관리 일체
- 강서 푸드뱅크·마켓 2호점에 속한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관리
- 강서 푸드뱅크·마켓 2호점 직원 임용, 활용, 관리
- 기타 위 각 1호의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무 일체

○ 위탁기간: 5년(2021. 8. 22. ~ 2026. 8. 2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연간 45,600원(구비 100%)

2) 추진일정

- 2021년 5월: 위탁 공모 및 위탁업체 선정(1,2호점 병합위탁)
- 2021년 6월: 협약체결
- 2021년 8월: 위탁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선옥)

- 본 동의안은 올해 8월 개소예정인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3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심의완료 하였음
- 검토 결과,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운영사무는 1호점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기부네트워크 활용 및 운영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위탁체 선정에 있어 기존의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의 지점의 성격으로 1호점과 함께 운영되는 만큼 푸드뱅크·마켓의 확대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등 기존보다 한층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